



표준 관리	적용 범위	표준 책임팀	적용 일자	검토 주기
	공통	HSE팀	2024.05.29	1회/2년
목적	이 지침은 경창산업(주)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업무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책임 및 절차에 대해 적용된다.			
성과관리	성과지표	산출기준	주기	비고
제·개정 사유	ISO 45001 & 14001 요구사항에 따른 최초 제정			



1. 업무 프로세스

해당사항 없음

2. 용어의 정의

NO	용어	정의
1	사업장폐기물	생산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등 환경 및 국민 보건에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하게 하는 물질(다이옥신, PCBs 등)을 말한다.
6	관리 대상 기기	변압기, 변류기, 콘덴서 등 다음과 같은 유입식(전기 절연 매체로 절연유를 사용하는 장비) 전력 장비를 말한다.
7	PCBs 함유 폐기물	PCBs가 2ppm 이상 함유된 절연유를 포함한 전력기기
8	오염기기	PCBs가 50mg/l 이상 함유된 기기, 설비, 제품 등을 말한다.



9	임시 보관장	폐기물을 발생 공정으로부터 폐기물 보관장 또는 쓰레기 선별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수거 후 임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10	폐기물보관장	최종 처리업체로 이송하기 위해 종류별로 분리하여 일정량이 될 때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기술관리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인력

3. 책임과 권한

3.1 HSE팀

- 1) 폐기물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총괄
- 2) 폐기물 허가/변경신고 등 인허가 업무
- 3)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계획 수립
- 4) 법규 및 제반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5) 폐기물 입반출 및 폐기물보관장 운영관리 (폐기물보관장 법정 표시 및 안전표시 설치)
- 6)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선정, 점검 및 관리
- 7) 사내 협력업체 발생 폐기물 처리 계약 확인 (음식물 폐기물 등)
- 8) 폐기물 처리관련 기술적 사항 검토
- 9) 폐기물 성분분석 및 모니터링
- 10) 건설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제반업무 총괄
- 11) 환경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의 이행

3.2 기술관리인

- 1)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 관리
- 2)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통제
- 3) HSE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4) 폐기물 적법배출 관련 관계자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 5) 원료,약품, 공정변경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시 HSE팀 통보
- 6) 폐기물 관련기록 문서화(전산화) 및 기록유지

4. 업무절차

4.1 폐기물배출자 신고



- 1) 각 팀은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 될 경우 HSE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HSE팀은 공인시험기관에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분석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4.2 폐기물의 배출 및 보관

- 1)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을 확인하여 배출시 계근하여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0H-0103-01)에 기록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기록시(Allbaro System)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2) 아래와 같은 폐기물은 드럼 및 용기에 담아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이 표시된 지정 폐기물 보관표지(0H-0103-02)를 부착하여 폐기물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폐기물과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 폐유 등 액상 폐기물(슬러지 주기적 청소 및 분리 보관)
 - (2) 침출수가 흘러나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분철 수거 운반시 침출수 발생)
 - (3)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
 - (4) 자연 발화 등의 기타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 3)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폐지, 폐파렛트 등은 지정된 곳에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4) 신규 폐기물은 발생량, 종류 등을 파악하여 HSE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5)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나 소량이라도 보관이 어려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HSE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6) 각 팀은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7) HSE팀은 폐기물보관소를 구분하고 표지판을 부착하여,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폐기물의 점검 및 처리

- 1) HSE팀은 폐기물 배출 및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에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 2)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을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4.4 건설폐기물 관리 및 처리

- 1) 건설공사 착공 전
 - (1)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 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금액에 계상
 - (2) 재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 서류에 명시
- 2) 건설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
 - (1)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건설폐기물이라 함)의 자체 또는 위탁 처리 결정
 - (2) 위탁 처리의 경우 업체 선정 및 위탁 계약 체결
- 3) 공사 착공에서 완료 시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 발생 예상 시 배출자(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신고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한 경우
-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5)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한 경우

5)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한 경우
-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
- (3)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 보관시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한 경우

6) 건설폐기물 반출시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상황 등(발생량,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및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4.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1) 사업장 내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대해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현황 목록을 작성유지
 - 가) 제조사, 제조 연월일, 용량 및 총 중량
 - 나) 절연 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 (2) HSE팀은 절연유 교체 및 폐기시에 PCBs 성분 분석의뢰를 한다.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3)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관리대상 폐기, 절연유(PCBs 2ppm 이상) 교체 등의 사유 발생 시에 HSE팀에 통보 한다.
- (4)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보관장소에 주의 사항 표지 부착, 오염물질 유출 방지턱 설치 등)

2) HSE팀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인허가, 성분 분석 및 처리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관리대상 대한 인허가 (신고 및 변경 신고) 주관
- (2) PCBs 성분 분석 및 결과 통보
- (3) 관리 대상 기기의 폐기 시에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 처리

4.6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1) HSE팀은 계약 전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다음 항목을 평가하여 폐기물처리 적합성의 결과를 통합구매팀에 통보하여 적격업체가 계약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1)처리 용량 및 실적
- (2)폐기물 처리업 허가서 및 필증 (재활용 신고 필증)
- (3)대 민원 발생 및 환경 법규 위반 사례 여부
- 2) 통합구매팀은 계약 시에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적격업체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계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처리 대상 품명, 처리 단가 및 대금 결제 방법
 - (2)운송 조건 및 운송시 책임사항
 - (3)관련 법규, 당사 관련 지침의 준수
 - (4)계약 유효기간 및 기타 필요사항
- 3) HSE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합구매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적법한 위탁 처리업체를 요청 및 선정하여야 한다.
 - (1)법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처리 능력을 초과한 경우
 - (3)처리업체 내부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

- 1) 오니류, 폐흡착재, 폐흡수재, 광재, 분진, 폐석면, PCBs 등의 폐기물을 사전 분석하여 배출처리 하여야 한다.
- 2) HSE팀은 안전시설, 장치 설치 및 방제 약품, 장비 및 사고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4.8 법적 선임자(기술관리인) 또는 담당자 임명 및 교육

4.8.1 기술관리인 임명

- 1) HSE팀은 폐기물보관장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고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기술관리인 교육 및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선임
 - (2) 기술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퇴사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4.8.2 기술관리인 관리사항

- 1) 폐기물 배출 및 보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폐기물 배출 및 보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4.8.3 기술관리인 법정 교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1) 기술관리인은 아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를 HSE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 기술관리인 법정 교육

대상	교육주기	교육기간
----	------	------



기술관리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정폐기물 배출자 의료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최초 :기술관리인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 보수 : 법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1년이내	1일(6시간) 이내 법기준에 따른 교육 시간 준수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 가능
--	--	--

5. 법적, 규제적 및 고객 요구사항

NO	요구사항	비고
1	폐기물관리법	
2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4.2.2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파악	

6. 기록 및 양식

NO	기록 및 양식	양식번호	보존년한	비고
1	폐기물관리 대장	0H-0103-01	1년	
2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0H-0103-02	1년	

7. 개정이력

NO	일자	개정내용
0	2024.05.29	ISO 45001 &14001 요구사항에 따른 최초 제정